간주법인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의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배병택**

<요 약>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의 형평성에 맞는다는 논증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간주법인과세선택제도를 고찰하여, 간주법인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는 그 규모가 영세한 개인기업과 이들 기업과 그 실체가 동일한 친족법인의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교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한 결과, 현행제도 하에서 음식점업의 경우는 수입금액 5억 원 이하의 개인기업은 법인기업보다 약1.8배 이상 더 많은 세 부담을 하고 있고,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는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에서는 개인기업의 세 부담이 적지만, 3억 원 이상이 되면, 여전히 법인기업보다 세 부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주법인과세의 이론적 근거로, 개인기업과 친족법인과의 동질성, 사업소득의 질적 구분 가능성, 기업실체의 실질소득의 인식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 제도는 친족법인과의 세 부담의 공평성과 개인기업의 성과측정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주제어〉 간주법인과세, 사업주보수

*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기성회 해외파견연구지원(2001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안동대학교 교수, btbae@andong.ac.kr, 054-820-5439

논문접수일 : 2004년 2월, 게재확정일 : 2004년 5월

Ⅰ. 서 론

법인기업의 임원보수와 같이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간주법인과세제도라 정의하고자 한다.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사업주보수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특히, 중소규모의 친족법인의 소득과세에 있어서 세 부담의 공평성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법적 측면이나 법 해석론에서는 다소 논리성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소득세 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기업에 적용하는 조세지원의 한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의 공평을 위한 조정방법으로는 ① 개인기업이 법인과세를 선택하는 방법(간주법인선택과세) ② 법인기업을 개인과세 하는 방법(간주개인과세) ③ 개인기업이 법인과세를 선택하는 방법과 법인기업이 개인과세를 선택하는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선택과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업주보수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개인기업과 그 실체가 다를 바 없는 중소규모의 친족법인과 개인기업 간의 소득세 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논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간주법인과세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창설에서 폐지까지의 경위, 내용, 문제점, 폐지이유 등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술하고자 한다.

일본은 1973년 7월 조세특별조치법에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간주법인과세선택제도」를 신설하였다. 간주법인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은 간주법인소득,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분할되어 과세되므로 그 부담세액의 득실을 판단하는 데는 개인의 원천소득의 구성에 따라 사례별로 규명해 보아야 한다. 일본의 이 제도는 법리적 논쟁에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체계상 모순 된다는 이유로 1992년도 귀속분까지 적용하고 폐지되었다. 일본의 「간주법인과세선택제도」는 개인기업의 근대화, 합리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개인기업과 사회적, 경제적 실태가 다른 점이 없는 중소규모의 친족법인과의 과세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창설된 제도이다.

한국과 일본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방법이 거의 동일하고, 사업소득은 자산운용부분과 사업주의 근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사업주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세방법은 개인기업이 조세회피나 절세의 목적으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액을 비교·분석해 보고, 그 부담의 공평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 중 간이과세자와 간편장부기장자 규모의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므로 기장과 납세사무가 간편하게 되어,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수입금액의 현실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Ⅱ. 일본의 간주법인과세선택제도

1. 제도의 창설 경위

일본은 1949년, 일본세제사절단의 권고(샤-프 권고)에 따라 1950년부터 개인사업자(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과세소득을 정확한 기장에 의해 산출하여 자진신고하는 자기신고납부제도의 정착을 목적으로 「청색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시행한 초창기는 기장의 곤란성, 세무서에 대한 불신감, 청색신고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보급이 저조하였다(全國靑色申告會總連合會編著, 1977, p.5). 당시의 중소기업청과 청색신고회연합회는 「청색신고제도」의 보급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정직한 신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한 결과, 1952년에 「청색전업자공제」[1]제도가 도입되고 1953년에는 기장방법의 요건을 완화한 간이기장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청색신고의 보급은 촉진되었다.

그러나 「청색전업자공제」는 법인기업의 임원보수가 전액 손금산입 되는 것에 비하여 그 혜택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왜곡된 현상을 시정하고 법인기업과의 과세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색전업자공제제도」는 수차 개정되어 「청색전업자완전급여제」 및 「청색신고공제제도」로 개편되었고, 1973년 7월에는 조세특별조치법에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간주법인과세선택제도」를 신설하였다(富岡幸雄, 198 0, pp.2-6).

가. 청색신고공제제도

일본의 법인체 수는 청색신고제도가 도입된 다음 해인 1951년에 34만 건이었으나 1955년은 42만 건, 1965년은 80만 건, 1975년에는 140만 건에 달했다(日本租稅硏究協會, 1981, p.148). 이러한 무절제한 법인전환은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는 폐단과 청색신고자의 성실한 기장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청색신고연합회는 “정직한 자가 바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세제의 확립”을 요청한 결과, 1952년에 “청색전업자공제”가 창설되어 연 5만엔을 한도로 청색신고자가 전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게 되었다(富岡幸雄, 1980, p.3). 이 청색전업자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액과의 조정, 청색신고의 장려 등으로 매년 증액되었고, 특히 1961년에 신설된 “백색전업자공제”와 연동되어 매년 상향조정되다가 1968년부터는 그 한도액이 폐지되고 “청색전업자 완전급여제”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계속되었다. 이는 청색전업자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법인의 과세방법이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1961년의 일본임시세제조사회는 다음과 같이 법인과세의 유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相原安夫, 1975, p.49).

(1) 법인기업이 되면 사업주보수는 근로소득으로 전환된다.
(2)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가족간의 소득분할로 누진세율 적용 시 유리해진다.
(4) 소득금액이 많은 사업자는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다.

---

1) 청색신고자에 대하여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이 그 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968년에 「청색전업자완전급여제」로 전환되었다.

(5) 임원보수나 가족에게 소득의 배분을 어느 정도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1961년의 임시세제조사회는 개인사업주보수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고, 친족회사가 친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한하는 제안을 하였다. 그 후 개인사업자는 불만을 표시했고, 법인전환은 계속되었다. 일본의 상법은 법인설립이 용이하고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세법은 친족법인이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고, 반대로 개인사업자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그 첫 조치가 청색신고공제제도의 도입이었다.

나. 백색전업자공제

1958년에 급증하는 농업법인의 과세문제가 계기가 되어 1961년에는 백색신고자에게 정액(당시 7만 엔)의 공제를 하는 “백색전업자공제”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과세당국이 농업법인의 소득은 실질소득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농지소유자 개인에게 과세하였다. 이와 형평성의 문제로 백색신고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의 세 부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계속되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의 과세문제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즉, 일정한 법인을 개인기업으로 과세하거나, 개인기업을 법인과세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의 세 부담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가족노동보수의 취급에 있다. 이 문제는 청색신고공제액의 인상, 백색전업자공제 제도의 도입, 배우자공제 제도의 신설 등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富岡幸雄, 1980, p.4).

다. 사업주보수제도의 실현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거친족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이 허용되었다. 남은 문제는 법인사업자와 세 부담 격차의 주된 원인인 개인사업자 본인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로 근로소득공제액은 계속 인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56년의 임시세제조사회는 일정한 한도로 개인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相原安夫, 1975, p.52).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종합과세 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원리이고, 개인사업자가 자기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富岡幸雄, 1980, p.5), 1971년에 “청색사업주특별경비준비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주보수 제도와는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되었다. 즉 청색신고의 장려, 노후보장, 사업소득금액의 조정을 목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의 5%(최대 한도액 10만 엔)까지 누적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가 일정요건에 달하면 환입하여 일시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0만 엔의 한도액과 환입 시에 과세한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적어, 1972년에 “청색신고공제”제도로 전환하였고, 청색신고공제 및 개인사업주보수 문제를 포함한 중소기업세제 전체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했다(渡邊幸弘, 1972, p.66). 이 결과 1971년 6월에 세제조사회 내에 소규모기업과세특별부회가 설치되어 간주법인과세를 중심으로 소규모기업과세에 관한 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昭和48年度税制改正答申3項).

(1) 청색사업소득자에게 “간주법인” 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보수의 지급을 인정한다.
(2) 사업주보수는 향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공제한다.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1973년 이 안은 5년간의 특별조치로 창설되었고, 그 후 3차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1992년도 분까지의 사업소득에 적용하게 되었다(일본 구 조세특별조치법 제25조의 2 제1항).

2. 간주법인과세선택제도의 내용

일본의 간주법인과세는 청색신고자로서 사업소득이나 사업규모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의 신고에 의하여 간주법인과세를 선택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액계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伊藤元夫, 1986, pp.24-28).

(1)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의 합계액에서 사업주보수를 공제한 잔액(간주법인소득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간주법인소득세액)을 계산한다.
(2) 간주법인소득액에서 간주법인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3) 사업주보수는 급여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되므로 신고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기장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4) 급여소득과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가. 대상자

청색신고자로서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간주법인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부동산소득은 사업규모의 부동산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신고 기한 및 방법

간주법인과세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간주법인과세를 받고자하는 연도의 전년 12월 31일(당해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개시 일로부터 2월내)까지 취지, 사업주보수액, 기타사항을 기재한 간주법인과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본 구 조세특별조치법 제25조의 2 제4항).

다. 사업주보수액

간주법인과세를 선택한 사업자는 청색신고 장부에 사업주보수를 매월 일정한 지급일에 기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일본 구 조세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9조의 6 제3항).
사업주보수액은 전년도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금액이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3월 15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본 구 조세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연도에 재변경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사업주보수 중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분은 과대보수로서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액에 가산한다.

라. 소득의 구분

(1)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보수는 급여소득의 수입금액이 된다.
(2)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에서 사업주보수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간주법인소득액이 된다.
(3) 간주법인소득액의 70%(800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7%)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분배(배당소득)로 간주한다. 즉, 간주법인소득액에서 간주법인소득세액과 주민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마. 소득세액의 계산

간주법인과세를 선택한 사업자의 소득세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이 된다.
(1) 간주법인소득액에 28%(8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7.5%)를 곱한 금액(간주법인소득세액)
(2) 간주법인소득과 관련된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통상의 소득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소득세액(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과세)

3. 간주법인과세제도의 논쟁

사업주보수의 필요경비성에 논리적인 논쟁이 있다. 즉 “사업주가 사업에서 보수를 받는다 해도 지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것일 뿐” 이라는 징세당국의 주장에 대하여 “사업과 가계를 구분하는 청색신고자에 있어서 호주머니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중소기업자들의 반박이 있었다(北野弘久, 1983, pp.92-100).
간주법인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은 간주법인소득,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분할되어 과세되므로 그 부담세액의 득실을 판단하는 데는 개인의 원천소득의 구성에 따라 사례별로 규명해 보아야 한다.
이 간주법인과세는 사업주보수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법인기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실기장, 성실신고를 유인하는 세무행정상의 정책수단이 제도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 간주법인소득액의 성질

원래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사업주보수를 공제한 후의 잔액은 어떤 성질의 소득인가에 대하여

(1) 사업소득 (2) 간주법인소득 (3) 중소기업세법의 창설 등의 의견이 있다.
사업주보수를 공제한 간주법인소득액을 배당소득이라 보고 법인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에 상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간주법인세상당액의 소득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잔액은 자산운용부분에서 발생한 소득 즉, 경영자이자 출자자인 사업주가 출자자의 지위에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相原安夫, 1975, p.66).

나. 과대보수액의 취급

법인기업의 임원보수는 과대보수가 아닌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보수는 특별한 의결 없이 전년도 말까지 사업주보수액을 정하여 신고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신고한 사업주보수 중 과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보수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간주법인소득액에 가산하여 통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간주법인소득액에 가산한 과대보수액에 대해서도 간주배당소득으로 보고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相原安夫, 1975, pp.64-65). 이 주장도 명확한 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다. 유보금의 인정

일본의 간주법인과세제도는 간주법인소득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임의의 유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유보금에 대하여는 통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일반법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동일한 납세자의 의제에 불과한 간주법인과세 제도에 유보금을 인정하게 되면, 세제가 매우 복잡해지고 또한, 간주법인과세를 폐지하는 경우는 간주법인이 일반법인 보다 유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다른 소득과의 불공평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市川深編著, 1976, p.178).

라. 원천징수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이들 사업자가 간주법인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사업주보수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이중의 원천징수가 된다는 주장이 있고, 이것은 간주법인과세의 선택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相原安夫, 1975, pp.68-69).

마. 간주개인과세

간주법인과세 제도를 부인하는 이론으로, 실체가 개인기업과 다르지 않는 중소규모의 친족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松澤 智, 1990, pp.6-7). 그러나 중소규모의 친족법인이 반수가 넘는 일본의 현실에서 이 법인들의 임원보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특히, 중소법인을 그 회원으로 하는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전국상공회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중소규모의 친족법인과 개인기업과의 세 부담의 균형은, 지금의 간주법인과세 제도가 지향하는 것 같이, 개인기업을 중소규모의 친족법인에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이 문제는 중소법인에 대하여, 세제상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중소친족법인에 가까이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진보적이고 온정적인 해

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播 久夫, 1986, p.108).

바. 사업소득의 근로소득화

사업소득의 일부가 사업주의 급여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기업과세의 논리로 보아야 하고, 헌법이 요청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 「개인의 존중」, 「법 아래의 평등」, 「생존권」 등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播 久夫, 1986, p.108).

4. 간주법인과세제도의 폐지

가. 폐지론자의 주장

간주법인과세 문제는, 매우 쉽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상법에 있다고 본다. 원래, 법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다운 기업만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모두는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엄격히 갖추어지면, 간주법인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법이 이에 대하여 무관심 한 것은 간주법인과세는 어디까지나 세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원래 소득세의 적용을 받아야 할 납세자가 「간주한다」라는 편의적인 수단에 의해,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현행세제의 기본적 틀을 무시하고, 오로지 기업의 형태에만 착안하여, 소규모·영세기업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제상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창설된 제도이다.

세제 특히, 소득세의 공평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간주법인과세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간주법인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급여소득자의 과세소득산정과 비교하여,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주가 자기에게 지급하는 사업주보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를 한다는 것이다.

가족종업원에 지급하는 전업자급여에는 그것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얻고 있지만, 사업주보수는 그 존재 자체에 큰 의문이 있다.

간주법인의 입장은, 회계처리에서 「사업」과 「가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개인사업주를 경영자의 측면과 근로소득자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란 본래, 개인사업주의 노동력, 노하우, 경영자의 자질 등이 합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근로소득자로 규정하고 사업주보수를 지급하고 있지만, 남은 부분의 사업소득은 도대체 어떤 담세력을 갖는 소득인지, 그 성격이 전혀 불분명하다. 사업주가 스스로 번 돈을 스스로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해가 어렵다.

간주법인과세의 지지자는, 자주 개인사업주의 교통사고 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대법원판결(1968년 8월 2일)을 증거로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 주된 논거는 판결에 의해 사업소득을 근로성소득과 자산성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판결로, 세제상 담세력과 관련하여 논증해야 할 사업소득의 산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업주보수를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세제상 우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간주법인과세에, 어째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가능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간주법인과세의 주장자 중에는, 스스로 위험부담을 갖고 소득을 버는 개인사업자와 회사에서 일하는 급여소득자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정년이 있고, 조직에 매여 출세도 뜻대로 안 되는 어려움도 있다. 사업주보수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자 만이 인정하는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의 요소가 많다)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소득세의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소득을 가득해 소비활동을 하는 가계로서, 개인사업주와 근로소득자는 과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평적 공평의 관점에서, 양자는 세 부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간주법인과세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법인이 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득세의 영역에 머물면서 법인세의 장점만을 향수하는 것이다(石 弘光, 1988, pp.6-8).
주민세균등할은 법인이 훨씬 무겁고, 교제비에 대해서도 법인이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 또 대손충당금의 법정한도액도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불리하고,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세 등 설립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간주법인은 이러한 법인으로서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친족회사 등의 소규모·영세 법인기업과 비교하여 사업주보수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에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기업은 장점과 단점 모두를 동일한 조세안에서 함께 적용되어야 하므로 불공평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播 久夫, 1991, pp.68-70).

나. 간주법인과세 제도의 폐지

간주법인과세특례제도는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 본인의 보수를 인정함으로써 사업과 가계의 구분경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개인사업의 경영 근대화,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도 세제개정으로 창설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하여, 간주법인과세를 선택한 개인사업자에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자의 강한 반발이 있어, 1987년 9월 세제개정을 통해 사업주보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즉, 사업주보수액이 전전연도 이전 3년 내의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과대보수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더욱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 개인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비용의 이중공제로 부당하다.
(2) 기업의 경영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가 법인기업으로 할 것인가는 각 경우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인데, 개인기업을 선택하고서도 법인기업의 세제상 장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세제조사회는 1991년 12월의 세제개정답신에서 과세의 적정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간주법인과세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제안에 따라 간주법인과세특례제도는 1992년도 분의 소득세까지 적용하고 폐지되었다(播 久夫,1991, pp.68-91).

Ⅲ. 간주법인과세제도의 필요성

1. 간주법인과세의 이론적 근거

가. 개인기업과 친족법인과의 동질성

개인기업의 본질은, 인적(사업주, 배우자, 부양가족, 친족, 종업원 등), 물적(설비, 자본 등) 요소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기업체」이며, 그 손익은 기업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법인기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또한, 개인기업의 사업주(경영자)가 그 기업체에 역무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이익의 가득에 공헌하고 있는 경제적 실태에 있어서도, 법인기업의 경영자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이와 같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특히, 중소규모의 친족법인과의, 기업체로서의 동질성 및 경영자의 역할과 그 실태의 동질성에 착안하면, 세제에 있어서도,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기업체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의 균형을 꾀하는 것은, 기업형태에 대하여 중립이어야 할 세제로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정직하고 성실한 기장을 하고, 이 기장에 근거하여 소득을 산출해서,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관습을 확립하는 것이 세무행정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는 먼저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세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1986년도 법인수는 45,844개였지만, 1996년도는 131,117개로 약 286%가 증가하였다. 그 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소위 「법인선호」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가 「경영의 합리화, 근대화를 위한 계산의 명확화」라는 대의명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이 되면 세금이 싸지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까지 고려하여, 조세회피 내지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조세는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공평한 세제가 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상, 그 사업에 소요된 모든 인건비(사업주 및 친족의 노무 대가를 포함하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에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그 인건비의 귀속자인 개인에게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자로 취급해야 한다.
원래, 세제는 기업형태에 대하여 중립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규모의 친족법인보다 개인기업의 세 부담이 많다. 이 주된 원인은 법인기업이 되면, 종래의 개인사업주가 대표이사(사장)가 되어,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과 가계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모두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법상의 인격에 얽매일 필요 없이, 사회적, 경제적 실태의 동질성에 착안하여, 개인기업에게도 법인기업의 사장보수에 상당하는 사업주보수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의 세 부담의 공평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에 대한 법인세과세제도가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13조). 즉, 납입자본금도 없고, 이익의 분배도 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 인격」을 인정한 것이며, 개인기업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이라는 「세 인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개인기업의 성과측정의 적정성

소득세법이,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적정한 손익계산도, 적정한 원가계산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고 없어진 부분을 「사업주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는 회계처리를 잘못 하고 있어 경영분석을 할 수 없다. 생활비 등을 「사업주인출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는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득세 부담이 많아진다(소득세법 제33조 1항 5호, 동법시행령 제61조 1항).
이러한 초과인출금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나 자산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보수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 하에서는 가사 관련경비는 필연적으로 발생 할 것이다. 사업주의 생활

비는 회피할 수 없는 지출이고 총수입금액이 적은 자영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금액 전부가 사업주의 생계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 면에서도 개인기업의 경영을 근로소득자의 소비생활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개인기업을 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생업으로만 취급하는 세제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기업실체에 관한 의식이 없다. 이러한 사고는 개인기업의 회계장부에 영향을 미쳐, 재무제표는 원가계산이나 경영분석 자료로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영 지표나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법인기업의 경영지표와의 비교는 무의미하게 된다. 운수업의 원가산정, 쌀 가격산정이나 대중목욕탕의 요금산정 등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보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무소의 경영성과가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은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들이 자기의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하거나, 사무소를 전세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종업원을 두지 않는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게 되어,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은 추계소득보다 많을 것이므로 기장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이나 자기자본 투자가 거의 없는 행상, 외판원, 점술가, 접대부 등의 소득은 자산운용소득이라 할 수 없고, 이는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소득의 질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사업소득의 질적 구분 가능성

현행소득세법은, 동일인에게 속하는 소득이라도, 그 소득의 종류, 성질에 의해 담세력이 다른 점에 착안해, 11종류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소득의 질적 측면에 착안해 담세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소득의 질적 담세력은 자산의 운용 또는 전환에 의한 소득이 크고,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작다고 보고, 조세특례에 의한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산소득에 중과하고, 근로소득은 경과하고 있다.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일체가 되어 생긴 소득」이기 때문에 「자산으로부터 생긴 부분」과 「근로로부터 생긴 부분」으로 나눌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구분한 일본의 대법원 판례(1968년 8월 2일)가 있다. 즉, 개인기업의 사업주의 상실이익의 산정은, 기업의 수익 중에 차지하는 기업주의 노무, 기타 기업에 대한 개인적 기여에 근거하는 수익부분의 비율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노무가액설).
사업소득을 「자산과 근로가 일체가 되어 생긴 소득」이라고 할 때는 그 성질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그 담세력에 과세하는 것이 양적 담세력과 함께 질적 담세력도 고려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합당하다고 본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의 의미에 대한 판단을 사회통념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라 할 때, 세법상의 사업의 의미는 “자기의 계산과 위험 하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이란 첫째, 자기의 위험과 계산 하에서 독립적으로 영위되는 업무이어야 하며, 둘째, 영리성을 갖고 또 반복 계속해서 수행할 의사와 사회적 실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전정구, 1989, p.322). 미국의 판례는 사업이란 “생계비 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간, 주의, 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본

투자가 없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에 적합한 것이고 일본의 판례는 “사업소득이라 할 때의 사업이란 자기의 계산과 위험 하에(바꾸어 말하면,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東京高裁, 昭53. 4. 11. 判決 52 (行) 49.).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사업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여 그 개념을 제한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판단은 사업이 지니는 기본적 속성인 영리목적성, 독립성, 계속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그 사업이 행해진 때의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일반사회 통념에 비추어 하여야 한다(대법원, 83누 548호, 1984. 3. 27.).
일반적 개념의 개인기업의 사업은 자연인인 사업주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주의 경영방침과 지휘통제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본운용소득과 근로 제공의 대가(근로소득)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자본운용소득이란 자본순환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기업이윤을 의미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단순한 자산운용소득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즉, 단순한 자산의 운용이 아닌 기업에 투자한 자본을 이용하여 기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기업이윤을 의미한다. 근로소득 부분은 사업주 개인과 종업원의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성된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을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세분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조). 이들 소득의 구분을 그 질적 측면에서 구분하면 ①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근로소득, 퇴직소득) ②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③ 자산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 산림소득) ④ 기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소득은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질적 성질이 애매하여 이 네 가지 구분으로는 ①의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②의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의 질적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세 부담의 차이를 둠으로써 응능부담에 의한 공평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소득과세의 기본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의 질적 속성이 단순화되도록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원인별로 사업소득을 분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사업의 개념과 사업소득의 질적 속성에 따라, 사업소득의 본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기업 그 자체에 의해서 획득된 것으로 이해하고 납세주체를 기업 그 자체에 두면 사업소득은 사업주와 종업원의 근로소득과 자본운용소득으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성격에 따른 구분에 자본운용소득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로 구분하면 사업소득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라. 기업실체의 실질소득의 인식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경비와 가사 관련경비를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급여에 배우자 등 가족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의 사업과 가계의 구분, 가계와 개인소비의 구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과정에서 사업과 가계를 구분하는 것은 명문상 규정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한 종류인 사업소득 자체를 사업과 가계로 구분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둘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6호),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포함되나(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1항), 사업자 본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업주급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소득세법기본통칙 27-3). 따라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통상적인 개념과 달리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포함되나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소득은 사업자의 노력과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됨에도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근로제공부분과 자산운용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금액의 산출과정에서 가사 관련경비를 구분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이라는 실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주도 그 사업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민법상 사업주 본인과의 고용계약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과세문제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실체의 관점에서 보아 실질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부분을 구분함으로써 사업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播 久夫, 1986, p.107).
조세부담의 공평과세의 원칙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에도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소득은 사업주가 사업 활동에 제공한 근로와 투하한 자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개인기업의 사업체와 그 소유자를 구분하여 사업체의 본질을 규명해 보면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이론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게 된다. 이는 납세주체이론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법인격이 없는 경제적 실체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하는 문제를 소득과세제도에 있어서 납세주체를 설정하는 원칙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면, 그 실체의 본질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법인으로 의제 하거나 법인격이 있는 실체를 개인으로 보거나, 그 실체와 소유주를 구별하여 과세소득의 개념과 그 계산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납세주체의 설정은 소득에 대한 조세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가득하게 한 주체를 납세주체로 하여 과세소득의 개념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고는 사법적 인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득한 주체를 납세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고를 개인기업에 적용하면 개인기업 그 자체가 소득의 가득 주체가 되고 납세주체는 개인기업 그 자체가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개인기업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사업주보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되고, 이는 다시 사업주의 근로소득이 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2. 다른 의견의 검토

가. 간주개인과세제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간주하는 데는 조세법의 이론이나 제도화에 무리가 있고, 일본에서도 이미 폐지된 제도이니 법인기업을 개인기업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소규모법인(Small Business Corporation)과세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소규모법인 과세제도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의 소득에 과세되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주지분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특수한 제도를 두고 있는 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통상적으로 “Subchapter S Corporation”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법인의 원천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형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1958년에 채택되었다(오혁주, 1988, p.151). 이 제도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의

측면에서 볼 때, “Subchapter S Corporation”의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법인이나 개인으로 과세 받는 것보다 유리한데, 이는 개인에 대한 세율이 법인에 대한 세율보다 1986년의 세법 개정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장덕영, 1993, p.12). 이 제도는 사업주체와 납세주체가 다른 경우이다.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보수는 손금이 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간주법인과세와 그 세 부담액이 같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과세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부담세액이 달라 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개인유사법인의 소득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화에 용이하겠지만, 실질적인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친족회사와 소유지분의 위장 분산 등으로 법인은 조세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나. 근로소득과의 공평성 문제 등

세 부담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때는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세법은 사업소득자에 비해, 근로 소득자를 우대하고 있다. 즉, 사업소득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공제(특별공제) 등의 방법으로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심리적 불공평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사업소득자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필요경비를 많이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회계의 신뢰성과 납세도의의 실현 차원에서도 개인사업자에게 성실한 기장을 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한 사례분석의 대상업종으로 택한 음식점업의 예에서도 그 기장의 어려움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가족종사원의 인건비의 산정 문제, 원재료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매입에 따른 증빙서류 등의 수취 곤란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업주보수를 인정하고, 이 사업주보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하고, 사업주보수를 공제한 잔액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을 적용한다면, 사업자도 근로자에 합당한 세 부담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자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간주법인과세제도는 처음부터 시한법으로 출발하여 수 차 개정하였고, 사업주보수를 공제한 잔액(간주법인소득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의 혜택과 법인세율의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었기에 근로소득자의 강한 반발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논의한 간주법인과세제도는 일본에서 시행한 바 있는 제도를 근간으로 수정한 간주법인과세제도로서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6호인 “종업원의 급여” 규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3호 “인건비”와 같이 “인건비(사업주보수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장하는 간주법인과세제도의 적용은 법인세법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납세비용이나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개인기업으로서의 세법상의 우대조치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3. 기업형태의 특성과 실태

가. 개인기업의 특성과 실태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중 46.5%에 해당하는 1,844천명이 간이과세자이고, 이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 세수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이다. 수입금액이 월 4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를 보상받는 정도의 영세자영사업자이다.

한편,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원 중 기장신고자는 45.7%에 해당하는 919천명이고, 이들 중 간편장부기장자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7%에 해당하는 374천명에 달한다.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7천500만 원 이하(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이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억원 이하(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인 영세개인사업자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5항). 이들 사업자들도 생계유지형 자영사업자로서 사업주의 인건비를 보상받는 정도의 사업규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그 성질이 자산운용소득이라기보다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가까운 것이다.

〈표 1〉 200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수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 유형		납세인원		과세표준		순세수	
		인원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3,963	100%	17,255,021	100%	316,088	100%
법인		345	8.7%	14,159,551	82.0%	261,323	82.7%
개인	계	3,618	91.3%	3,095,470	18.0%	54,765	17.3%
	일반	1,774	44.8%	2,824,368	16.4%	53,831	17.0%
	간이	1,844	46.5%	271,102	1.6%	934	0.3%

주 : 소액부징수를 포함한 2002년도 2기 확정 신고인원임

자료 : 국세청(2003),『제243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 p.51

〈표 2〉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단위 : 천명)

구분	총 납세인원	신고인원	기장신고인원
2002 귀속	4,160	2,010	919
2001 귀속	3,808	1,782	790
증감(%)	9.3%	12.8%	16.3%

주 : ① 납세인원에는 분리과세소득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됨

② 확정신고 인원에는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 자는 제외된 인원임

자료 : 국세청(2003),『제243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 p.52

〈표 3〉 2002 귀속 기장사업자 유형별 신고현황

(단위 : 천명)

구분	기장인원	세무조정	간편장부
납세자	919	545	374
구성비	100%	59.3%	40.7%

자료 : 국세청(2003),『제243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 p.52

나. 법인기업의 특성과 실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중 8.7%에 해당하는 345천명이 법인사업자이며, 이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 세수의 82.7%에 달한다. 그러나 2002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의 법인수는 55.7% <표 4>, 자산규모가 5억 원 미만인 법인수는 64.2%<표 5>,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의 법인수는 48.3%<표 6>로 법인의 영세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표 7>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휴업, 폐업, 개업 준비중에 있는 약28,000개를 감안하면 법인설립의 용이성과 무질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법인 중에도 주식회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그리고 과거 6년간의 결손 신고한 법인은 평균 30.1%에 해당하는 69,509개에 달하고 있다<표 10>.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도 한 해 동안 6만개가 넘는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중 사채업자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신설법인의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한다(국세청, 2003, p.14). 기존의 친족법인들이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본금 규모가 적은 영세한 주식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데는 경영상의 문제보다 조세의 회피 내지는 절세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법인선호 현상은 현행의 상법이나 조세법 체제하에서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외형규모별 법인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5억 미만	5억 ~30억	30억 ~100억	100억~ 1000억	1000억 ~1조	1조 이상
법인수	317,154	176,621	95,042	32,027	12,088	1,201	175
점유비	100%	55.7%	30.0%	10.0%	3.8%	0.4%	0.1%

자료 : 국세청(2003),『제243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 p.54

〈표 5〉 자산 규모별 법인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5억 미만	5억 ~10억	10억 ~100억	100억 ~500억	500억~ 1000억	1000억 ~1조	1조 이상
법인수	317,154	203,519	40,895	59,324	9,359	1,936	1,842	279
점유비	100%	64.2%	12.9%	18.7%	2.9%	0.6%	0.6%	0.1%

자료 : 국세청(2003),『제243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 p.55

〈표 6〉 자본금 규모별 법인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1천만 미만	1천만 ~5천만	5천만 ~1억	1억 ~10억	10억 ~100억	100억 이상
법인수	317,154	71,837	3,194	78,109	140,371	21,067	2,576
점유비	100%	22.7%	1.0%	24.6%	44.3%	6.6%	0.8%

자료 : 국세청(2003),『제243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 p.55

〈표 7〉 연도별 법인 수

(단위 : 개)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법 인 수	181,835	206,354	242,652	286,352	317,154

주 : 당해연도말 가동법인 기준임

자료 : 국세청(2003),『국세통계연보』

〈표 8〉 연도별 법인 증가 수

(단위 : 개)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법인수	2,519	24,519	36,298	43,700	30,802
증가율	1.4%	13.5%	17.6%	18.0%	10.8%

주 : 1997년도 법인수 179,316

자료 : 국세청(2003),『국세통계연보』

〈표 9〉 법인 유형별 법인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주 식	유 한	합 자	합 명	비영리	외 국
법인수	317,154	289,386	9,428	4,027	874	12,274	1,165
점유비	100%	91.2%	3.0%	1.3%	0.3%	3.9%	0.3%

자료 : 국세청(2003), 『제243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 p.55

〈표 10〉 연도별 결손법인 수

(단위 : 개)

연 도	평 균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법인수	69,509	52,295	66,406	68,401	67,892	85,607	76,455
비 율	30.1%	29.2%	36.5%	33.1%	28.0%	29.9%	24.1%

자료 : 국세청(2003), 『국세통계연보』 2-3-2 지방 국세청별 법인세 신고현황(2-1)

Ⅳ.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 비교

1. 비교모형의 설계

(가) 업종은 음식점업(일반한식)으로 한다. 음식점업의 현금매출 분은 과소기장이 용이하고, 재료비 등의 지출증빙을 구비하기가 어려워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데 힘든 업종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기업의 성실기장을 가능케 하는 법적 질서를 모색하는 데 있다.

(나) 사업수입금액은 4천800만 원, 1억5천만 원, 3억 원, 5억 원으로 구분한다. 간주법인과세는 영세자영사업자에 대한 선택과세제도 이므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기장자, 그리고 영세법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수입금액이 연간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교한다.

(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일반 한식점의 단순경비율 87.4%(2002년도 기준)와 배율 1.2를 적용한다. 따라서 수입금액 4천800만 원에 대한 소득률은 12.6%이고, 그 외의 경우는 15.12%가 된다. 각 수입금액별 개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은 다음 <표 11>과 같다.

(라) 사업주(대표자)보수는 연 18,000,000원 + 사업주보수공제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각 수입금액별 사업주보수액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수입금액별 추계소득과 사업주보수액

(단위 : 원)

수입금액	48,000,000	150,000,000	300,000,000	500,000,000
추계소득금액	6,048,000	22,680,000	45,360,000	75,600,000
대표자 보수	21,024,000	29,340,000	40,680,000	55,800,000
법인소득금액	△14,976,000	△6,660,000	4,680,000	19,800,000

(마) 친족법인이나 1인 회사는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사업주(대표자)의 종합소득공제액은 기본공제(4인 가족) 4,000,000원과 특별공제 600,000원(표준공제) 합계 4,600,000원으로 한다.

(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2004년 1월 1일 현재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아) 사업주(대표자)에게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만 비교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법인기업의 세 부담 계산

비교모형의 설계 조건에 따라 법인기업의 세 부담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법인기업의 과세표준은 개인기업의 추계소득금액에서 대표자 급여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율은 13%로 적용한다. 법인기업의 세 부담총액은 대표자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담액을 고려하여야 개인기업과의 비교에 의미가 있다.

〈표 12〉 법인기업의 세 부담액

(단위 : 원)

		A	B	C	D
	수입금액	48,000,000	150,000,000	300,000,000	500,000,000
a	과세표준	△14,976,000	△6,660,000	4,680,000	19,800,000
b	법인세액	0	0	608,400	2,574,000
c	근로소득세액	223,577	866,020	2,697,160	5,243,800
d	합 계	223,577	866,020	3,305,560	7,817,800

(근로소득세액 계산)

(단위 : 원)

e	총급여액	21,024,000	29,340,000	40,680,000	55,800,000
f	근로소득공제	10,903,600	12,151,000	13,318,000	14,290,000
g	근로소득금액	10,120,400	17,189,000	27,362,000	41,510,000
h	종합소득공제	4,600,000	4,600,000	4,600,000	4,600,000
i	종합소득 과세표준	5,520,400	12,589,000	22,762,000	36,910,000
j	산출세액	496,836	1,366,020	3,197,160	5,743,800
k	근로소득 세액공제	273,259	500,000	500,000	500,000
l	결정세액	223,577	866,020	2,697,160	5,243,800

주 : 근로소득세액은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할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다.

3. 개인기업의 세 부담 계산

비교모형의 설계조건에 따라 개인기업의 세 부담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 13> 및 <표 14>와 같다. <표 13>은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의 제도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 <표 14>는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간주법인과세 제도를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이 경우의 사업소득금액은 법인기업의 과세표준과 같고, 근로소득금액은 법인기업의 대표자 근로소득금액과 같다.

〈표 13〉 개인기업의 세 부담액(사업주보수 불인정-현행법)

(단위 : 원)

		A	B	C	D
	수입금액	48,000,000	150,000,000	300,000,000	500,000,000
a	사업소득금액	6,048,000	22,680,000	45,360,000	75,600,000
b	종합소득공제	4,600,000	4,600,000	4,600,000	4,600,000
c	종합소득 과세표준	1,448,000	18,080,000	40,760,000	71,000,000
d	산출세액	130,320	2,354,400	6,505,200	14,670,000
e	결정세액	130,320	2,354,400	6,505,200	14,670,000

〈표 14〉 개인기업의 세 부담액(사업주보수 필요경비 산입)

(단위 : 원)

		A	B	C	D
	수입금액	48,000,000	150,000,000	300,000,000	500,000,000
a	사업소득금액	△14,976,000	△6,660,000	4,680,000	19,800,000
b	근로소득금액	10,120,400	17,189,000	27,362,000	41,510,000
c	종합소득금액	△4,855,600	10,529,000	32,042,000	61,310,000
d	종합소득공제	0	4,600,000	4,600,000	4,600,000
e	종합소득 과세표준	0	5,929,000	27,442,000	56,710,000
f	산출세액	0	533,610	4,039,560	10,811,700
g	근로소득 세액공제	0	285,083	500,000	500,000
h	결정세액	0	248,527	3,539,560	10,311,700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소득세법에 의한 개인기업의 세 부담액을 계산한 <표 13>과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의 개인기업의 세 부담액을 계산한 <표 14>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개인기업간의 세 부담 비교

(단위 : 원)

수입금액	48,000,000	150,000,000	300,000,000	500,000,000
사업주보수 불인정시 세 부담	130,320	2,354,400	6,505,200	14,670,000
사업주보수 인정시 세 부담	0	248,527	3,539,560	10,311,700
차 이	130,320	2,105,873	2,965,640	4,358,300

위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즉 사업소득을 자산운용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분할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세 부담액이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공제액이 과세에서 제외되고, 근로소득에는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모의 사업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만 있고, 간편장부 이용자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실한 기장을 기대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5억 원 이하에서는 수입금액이 클수록 세 부담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차이의 비교 · 분석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앞의 법인기업의 세 부담액을 계산한 <표 12>와 개인기업간의 세 부담액의 비교표인 <표 15>를 요약해 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 부담의 차이는 사업주(대표자)보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법인세 세율과 소득세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16〉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 비교

(단위 : 원)

수입금액	48,000,000	150,000,000	300,000,000	500,000,000
법인기업	223,577	866,020	3,305,560	7,817,800
개인기업 (사업주보수 불인정)	130,320	2,354,400	6,505,200	14,670,000
개인기업 (사업주보수 인정)	0	248,527	3,539,560	10,311,700

위 <표 16>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 비교표에서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제도하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차이 만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17>를 작성해 본다.

〈표 17〉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차이(현행제도)

(단위 : 원)

수입금액	48,000,000	150,000,000	300,000,000	500,000,000
개인기업 (보수불인정)	130,320	2,354,400	6,505,200	14,670,000
법인기업	223,577	866,020	3,305,560	7,817,800
차 이	△93,257	1,488,380	3,199,640	6,852,200
개인 / 법인	58.3%	271.9%	196.8%	187.6%

위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제도 하에서는 수입금액 5억 원 이하의 개인기업은 법인기업보다 세 부담을 약 1.8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기업이 더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하에서는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세 부담이 많은 것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가 아닌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에게는 특별공제 등 개인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차이가 적어지는데 이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소득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 부담을 현저하게 적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 때문에 법인기업을 선호하게 되고, 그 실체가 본래의 법인과 다른 개인유사법인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세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현행의 법인과세제도와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간주법인과세제도와의 세 부담차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차이(사업주보수 필요경비 산입의 경우)

(단위 : 원)

수입금액	48,000,000	150,000,000	300,000,000	500,000,000
개인기업 (보수인정)	0	248,527	3,539,560	10,311,700
법인기업	223,577	866,020	3,305,560	7,817,800
차 이	△223,577	△617,493	234,000	2,493,900
개인 / 법인	0%	28.7%	107.1%	131.9%

위 <표 18>은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모두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손금)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경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종합과세 되고, 법인기업의 경우는 법인소득과 대표자 근로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점과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에서는 개인기업의 세 부담이 적지만, 3억 원 이상이 되면, 여전히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세 부담이 많아지며, 수입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개인기업의 세 부담이 많아진다. 이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법인세율보다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과 같게 된다.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미국의 소규모법인과세제도인 “Subchapter S Corporation”에서 지분 100%를 1인이 소유하는 경우의 소규모법인이 부담하는 세액과 같다.

이러한 현상은 세 부담의 수직적 공평을 반영해 주고 있으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간주법인과세는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라 판단된다.

Ⅴ. 결 론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는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47%에 달하고, 간편장부기장자도 기장신고자의 41%에 달한다. 한편, 외형규모 5억 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기업이 56%에 달하고 있다. 이들 법인기업은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친족법인이거나 1인 회사들이다. 이와 같은 법인기업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법인기업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법인과세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절세에 있다고 본다.

조세는 기업형태에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기업의 사업주보수를 법인기업의 대표자보수와 같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간주법인과세를 검토하였다.

본고의 이론적 토대가 된 일본의 간주법인과세선택제도는 1973년도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창설되었는데, 이 제도는 사업주보수공제 후의 사업소득을 간주법인소득으로 보고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가 너무 복잡하고 과세이론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1992년도에 폐지되었다. 그 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친족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간주개인과세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업주보수를 현행의 소득세법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비교모형으로 설계하여 수입금액을 4분류하여 각 추계소득에 대한 세 부담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행제도에서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수입금액 5억 원 이하의 경우 1.8배 이상의 세 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는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에서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세 부담이 적지만,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여전히 개인기업의 세 부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주법인과세제도를 주장하는 논거로서 개인기업과 친족법인과의 동질성, 사업소득의 질적 구분 가능성, 기업실체의 실질소득의 인식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 제도는 친족법인과의 세 부담의 공평성과 개인기업의 적정한 경영성과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이 간주법인과세제도는 사업주보수를 필요경비로 가장 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한 회계장부의 비치·기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기장을 통한 수입금액의 현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기업의 성실기장을 가능케 하는 데 있다.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수입금액의 현실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가의 검정 문제는 이 논문에서 직접 규명하지 못하고 다른 실증연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4.

_____,『법인세신고와 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2003.

_____,『제243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 2003.

오혁주, “미국의 개인소득과세제도”,『주요국의 개인소득과세제도 : 4인 조사보고서』, 1988, pp.119-309.

장덕열,『미국세무의 이론과 실제』, 1993.

전정구,『한국조세법의 제 문제』, 1989.

渡邊幸弘, “昭和47年度租稅特別措置法の改正”,『自治硏究』47券 7號, 1972, pp.60-75.

北野弘久,『憲法と稅財政』, 1983.

富岡幸雄,『個人企業課稅の基本的課題』, 1980.

相原安夫, “みなし法人課稅選擇をめぐる諸問題”,『稅務大學校論叢』第9號, 1975, pp.49-69.

市川深編著,『稅務會計(經營會計全書23)』, 1976.

松澤 智, “みなし個人課稅導入の法理-法人制度の濫用による租稅回避防止のための提言-”,『稅務弘報』Vol.38 No.11, 1990, pp.6-15.

石 弘光, “みなし法人課稅の問題點”,『稅務弘報』, Vol.36 No.7, 1988, pp.6-11.

日本租稅硏究協會,『稅制參考資料集』, 1981.

伊藤元夫,『靑色申告』, 1986.

全國靑色申告會總連合會編著,『事業主報酬(みなし法人課稅制度)の理論 -問題點と改正要望-』, 1977.

播 久夫, “みなし法人課稅は不公平か-その經緯と理論的根據”,『稅務弘報』 Vol.34 No.6, 1986, pp.105ー109.

_____,『みなし法人課稅廢止論と中小企業稅制』, 1991.

A Study on an Individual Business Regarded as a Corporation in the Taxation System

-Focused on the Tax System of Japan-

Byung-Tack B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at there was equity of tax payments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business corporations in recognizing the proprietor pay as part of the business expenses that a private enterprise needed to earn business income.

For this, a consideration was made of Japan's selective taxation system that regarded an individual business as a corporation and used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oncerning taxation system that regarded an individual business as a corporation.

A great portion of Korea's business enterprises consisted of small-sized private enterprises and relative corporations whose entity was the same as that of the private enterprises.

A comparison model was design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business corporations in terms of tax payments.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

Under the current system, those private enterprises whose income was 0.5 billion won or less paid 1.8 times as much as those business corporations. With the proprietor pay recognized as part of the business expenses, those private enterprises whose income was 0.3 billion won or less paid less tax, while those private enterprises whose income was 0.3 billion won or more still paid more tax than those business corporations.

The theoretical bases for introducing the tax system that regarded an individual business as a corporation included the homogeneity of a private enterprise and a relative corporation, the possibility of business income being qualitatively categorized, and the need to perceive the real income of a business entity. In conclusion, the tax system that regarded an individual business as a corporation was in demand in the name of the tax payment equity with relative corporations and of the business rationalization of private enterprises.

〈Key words〉 Individual Business Regarded as a Corporation in the Taxation System, Payments of private enterprises

*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